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0. 6. 17. (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0. 5. 22.
- 회부일 : 2020. 5. 26. (의안번호 : 20-63)

2.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확대를 통해 주민주도의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확대 (안 제3조)
- 주민자치회 정원 수정 (안 제5조)
-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안 제6조, 제8조)
- 동행정과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구체화
(안 제6조, 제8조, 제20조)

- 주민자치위원의 의무 강화 및 연임 규정 구체화
(안 제9조, 제11~12조)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 신설 (안 제22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5.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실시 추진 중이며 조례안 부칙에 2020년 6월 30일까지인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 기존 시범동을 운용하면서 문제점을 보안과 주민자치회 사업 확대 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내용,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함.
 -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을 「특별법」 으로 변경함.

- 안 제5조에 정원을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변경함.
- 안 제6조 제1항에 위원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시로 변경하고 제2항에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호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마을사업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내로 변경함.
-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20조에서는 동행정과 주민자치회와의 협력 관계 구체화 함.
- 안 제9조, 안 제11~안 1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사익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의무 강화 및 연임 규정 구체화 신설함.
- 안 19조 제6항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조항을 신설함.
- 안 제22조 제5항에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 신설함.

○ 부칙개정안 내용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함.
- 제3조(주민자치위원회 해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개정함.

○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6회 임시회 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시범동 5개의 존속기한이 6월30일 만료되기 때문에 일부사항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

○ 당시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성향 우려, 소관 분과별 갈등, 행사경비 일회성 비용지출, 위탁업체 및 지원관의 자질에 관한 문제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된 결과로 부결되었음에도 원인 분석을 통한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다시 안건으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음.

○ 다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미비점인 주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소극적인 주민 참여 방식을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대안이 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지난 6월 10일 주민자치회 시범 5개동 회장단과 행정건설위원회들과의 간담회는 주민자치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서로 입장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되며, 회장단에서는 현재 계획 확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이 5개 시범동이라도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회장단의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 마포구의 재정자립도(31.6%)를 볼 때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이 정지되거나 축소된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그 결과물의 성과를 토대로 전동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지금까지의 매몰비용을 생각할 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됨.
- 주민자치회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존속된 주민자치의 틀을 깨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주민자치회는 내외부적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이런 갈등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필연적인 과정인지 아님 정책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